安山市中小企業技術開發資金管理條例(案)

의 안 번 호	367

제출년월일 : 1995. 2.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제정이유

○ WTO체제의 출범으로 국경없는 무한경쟁이 예고되고 있고, 세계화에 전면 돌입하여 산업의 고도화와 기술혁신의 가속화로 신기술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산·학·연·관이 공동연구 체계를 구축하여,

○ 대학이 중소기업들의 공동연구소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생산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지원과 행정지원을 통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근거 법규

○ 지방자치법 제15조

□ 기관별 역할분담

○ 시 :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지원 및 행정지원

○ 대 학 : 연구인력 및 연구시설 제공, 기업체 기술지도

○ 연 구 기 관 : 대학의 요청시 연구인력 및 보유장비 지원

○ 기 업 체 :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일부 부담 및 사내 기술인력 투입

※ 중소기업기술개발위원회 : 기술개발 경험이 풍부한 학계, 연구원,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며 기술개발 연구과제 선정 및 평가 분석에 관한 사항 심의

□ 주요골자

○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 교부대상 (안 제3조)

주 사무소와 공장이 안산시내에 소재하며 공장등록을 필하고 가동중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 신제품 개발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신기술 개발
- · 설비 및 공정의 개선에 관한 기술개발
- · 기술경영의 합리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항
-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중소기업기술개발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7조, 제8조)

- 위원 : 기술개발경험이 풍부한 학계, 연구원, 관계공무원등 10인이내로 구성
-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
- 기능
  - · 사업 분야별 대학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심의
  - · 기술개발자금의 교부대상자 결정 및 교부금액에 관한 사항 심의
  - · 사업운영 실적보고서의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 심의
  -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 교부방법 및 시기 (안 제11조)

- 자금교부 : 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을 대학에 일시불 교부
- 교부시기 : 대학의 세부사업계획서 접수후 지급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적보고 (안 제13조)

- 사업운영 실적보고서 제출 시기 : 사업을 완료 또는 중지하였을 때
- 제출된 사업운영 실적보고서는 위원회에서 심의후 시장의 승인을 득할것
- 시장은 필요시 대학 및 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의견청취 또는 보완자료 요구

□ 참고자료

○ 상공자원부고시 제1994 - 69호 (1994. 6. 7)

○ 공업장려금교부규칙 (대통령령 제13870호 1993. 3. 6)

○ 안산시보조금관리조례 (안산시 조례 제199호 1988. 5.19)

안산시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관리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학의 기술개발 자원을 활용하여 생산현장에서 겪고 있는 기술적인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 교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2.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이하 "자금" 이라 한다)이라 함은 중소기업의 생산현장에서 겪고 있는 기술적인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산·학·연 공동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 예산등으로 지급되는 교부금을 말한다.
3. "대학"이라 함은 시장과의 협약에 의거 중소기업 생산현장의 기술적인 애로사항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과 공동연구를 시행하고 있는 대학(교)을 말한다.

제3조(교부대상) 시장은 주 사무소와 공장이 안산시내에 소재하며 공장등록을 필하고 가동중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부할 수 있다.

1. 신제품 개발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신기술 개발
2. 설비 및 공정의 개선에 관한 기술개발
3. 기술경영의 합리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항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중소기업기술개발계획의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 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교부신청) ①자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학과 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 후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교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3. 협약서
4. 기타 제출서류

제6조(교부대상자의 결정) 시장은 자금의 교부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안산시중소기업기술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자금을 교부함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자금의 교부결정을 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시장은 제6조에 의한 교부대상자 결정등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역경제국장이 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하되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기지방공업기술원 연구원 1인
2. 대학교수 3인
3. 시의회 산업위원회 의원 1인
4. 기업체 연구소장 2인
5. 기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자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공업과장이 된다.

⑦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위원회의 위원중 안산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 분야별 대학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심의
2. 자금의 교부대상자 결정 및 교부금액에 관한 사항 심의
3. 사업운영 실적보고서의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 심의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제9조(교부조건) 시장은 자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교부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사업을 변경 또는 중지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을 것
2. 사업이 예정기일 내에 완료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게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할 것
3. 기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교부결정 통지) 시장이 자금의 교부결정을 한 때에는 신청자 및 대학에 그 결정의 내용과 교부조건을 통지한다.

제11조(교부방법 및 시기) ①자금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을 일시불로 교부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대상자로 결정된 업체에 대한 자금의 교부는 시장과의 협약에 의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에 직접 지급한다.

②대학은 제10조의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세부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세부사업계획서의 접수후 자금을 교부한다.

제12조(사정변경으로 인한 결정의 변경·취소) 시장은 자금의 교부결정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사업중 이미 수행된 부분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13조(실적보고) ①중소기업과 대학은 사업을 완료 또는 중지할 때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운영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사업운영 실적보고서는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한 후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시장은 사업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 및 기업으로부터 직접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사업의 신고) 자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을 완료 또는 중지하였을 때
2. 업체명, 대표자 및 소재지 기타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
3. 사업자가 파산하였을 때
4.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5조(결정의 취소) 시장은 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자금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교부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할 때
2. 이 조례 또는 교부결정의 내용 및 교부조건에 위반할 때
3.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때
4. 허위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자금을 지급 받을 때
5. 제14조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할 때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교부신청서

<table>
<tr><td rowspan="6">업체현황</td><td>업 체 명</td><td colspan="2"></td><td>주생산품목</td><td colspan="3"></td></tr>
<tr><td>대 표 자</td><td colspan="2"></td><td>전화번호</td><td colspan="3"></td></tr>
<tr><td>자산총액</td><td colspan="2">백만원</td><td>총매출액</td><td colspan="3">백만원</td></tr>
<tr><td rowspan="2">소 재 지</td><td>주 사무소</td><td colspan="5">안산시 동 번지</td></tr>
<tr><td>공 장</td><td colspan="5">안산시 동 번지</td></tr>
<tr><td rowspan="2">규 모</td><td>대 지 ㎡
건 평 동 ㎡</td><td colspan="2">상 시 종업원</td><td>계</td><td>사무직</td><td>생산직</td></tr>
<tr><td colspan="2"></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기술개발사업과제</td><td colspan="2"></td><td colspan="2">예 상 사 업 비</td><td colspan="2">백 만 원</td></tr>
</table>

□ 사업개요(신청자가 영위하는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기술)

위와 같이 안산시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 기술개발사업의 목적

□ 기술개발사업의 내용

□ 기술개발사업 수행계획

□ 기술개발사업 기간

□ 기술개발사업의 소요경비
※ 개발사업금액의 산출기초 : 총경비와 자기부담액

□ 기술개발사업의 효과

□ 기 타

년 월 일

업체명

신청인 (인)

지 방 자 치 법

1994. 3.16 법률 제4741호

제15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지 방 자 치 법

1994. 3.16 법률 제4741호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농림·상공업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타. 중소기업의 육성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로 배분하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시·군 및 자치구

제1호에서 시·도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를 제외한 사무

②제1항의 배분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 방 자 치 법 시 행 령

1994. 7. 6 대통령령14317호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 표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제8조관련)

구 분	시 · 도 사 무	시 · 군 · 자치구 사무
3. 농림 · 상공업등 산업 진흥에 관한사무 타. 중소기업의 육성	1) 지방중소기업 육성지원 계획 수립 7)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1) 지방중소기업 육성지원 세부계획의 수립 · 추진 7) 중소기업 육성보조금 교부 8) 중소기업 육성 · 지원업체의 선정 · 추천

●공업장려금교부규칙〔1969·12·5 대통령령제4414호〕

개정 1993·3·6 대통령령제13870호(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목적) 상공자원부장관은 공업경영의 합리화, 기술의 향상에 관한 연구조사와 공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이 영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공업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93·3·6〉

제2조 (대상) 장려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시설(이하 "장려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자에게 그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한다.

1. 공업경영의 합리화를 목적으로 하는 조사·연구·진단 및 교도사업
2. 공업기술의 시험·연구 및 지도사업
3. 중소공업단체의 공동사업
4. 중소공업의 근대화를 위한 시설의 대체
5. 수출진흥을 위한 기술연구 및 시작
6. 특산품의 생산시설 및 선전사업

제3조 (장려금의 교부신청) ①장려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상공자원부장관에게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3·6〉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는 전년도 6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장려금교부의 결정) 상공자원부장관은 장려금교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신청서의 심사와 현지조사를 행한 후 장려금을 교부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려금교부의 결정을 한다. 〈개정 93·3·6〉

제5조 (교부조건) ①상공자원부장관이 장려금을 교부할 때에는 장려금 교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93·3·6〉

1. 장려사업에 필요한 경비배분의 변경을 할 때에는 상공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것
2. 장려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에 관한 사항
3. 장려사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상공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것
4. 장려사업을 휴지 또는 폐지할 때에는 상공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것
5. 장려사업이 예정기일 내에 완료하지 아니하기나 장려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에는 즉시 상공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할 것
6. 기타 장려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상공자원부장관은 장려금교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항의 교부조건 이외에 장려사업의 완성 후에 이행할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93·3·6〉

제 6 조 (교부결정통지) 상공자원부장관은 장려금교부의 결정을 한 때에는 신청자에게 그 결정의 내용과 교부조건을 통지한다. 〈개정 93·3·6〉

제 7 조 (사정변경으로 인한 결정취소등) 상공자원부장관은 장려금 교부의 결정을 한 후 천재·지변 또는 자기부담부분의 부담불능 기타 사정의 변경으로 장려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려금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 결정의 내용 또는 그 교부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장려사업중 이미 수행된 부분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개정 93·3·6〉

제 8 조 (보고) 장려사업자는 장려사업수행중 매월말 현재의 경리 및 사업진행상황을 다음 달 10일까지 상공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3·3·6〉

제 9 조 (시정명령등) ①상공자원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받고 장려사업수행이 장려금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교부조건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려사업자에게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3·3·6〉

②장려사업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할 때에는 장려금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 (실적보고) ①장려사업자는 장려사업을 완료 또는 폐지할 때와 제 7 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려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및 사업비정산서를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3·6〉

②장려금교부결정이 속하는 정부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제11조 (심사 및 장려금의 확정과 통고) 상공자원부장관은 전조제 1 항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정산서를 받은 때에는 그 사업의 성과가 장려금교부결정의 내용 및 교부조건에 적합한가 여부를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할 장려금의 액을 확정하여 장려사업자에게 통고한다. 〈개정 93·3·6〉

제12조 (시정조치) ①상공자원부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그 성과가 장려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교부조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3·3·6〉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가 시정한 때에는 상공자원부장관은 교부할 장려금의 액을 확정하여 당해 사업자에게 통고한다. 〈개정 93·3·6〉

제13조 (장려금교부시기) 장려금은 전 2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 후에 교부한다.

다만, 장려사업이 영리성을 띠지 아니한 것이거나 장려금확정 전에 교부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긴급·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 (검사) ①상공자원부장관은 장려금집행의 적정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장려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업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임하여 사업에 관한 서류·물품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 대하여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3·3·6〉

②전항의 경우에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5조 (결정의 취소) ①상공자원부장관은 장려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장려금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93·3·6〉

1. 장려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때
2. 이 영 또는 이 영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때
3. 교부결정의 내용 및 교부조건에 위반한 때
4.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장려금의 교부를 받은 때
5.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 또는 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

②전항의 규정은 장려금확정 후에도 이를 적용한다.

③장려금교부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장려사업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장려금의 반환) ①상공자원부장관은 장려금교부의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사업부문에 이미 장려금이 교부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반환을 명한다. 〈개정 93·3·6〉

②상공자원부장관은 장려금이 확정된 경우 이미 장려금이 그 액을 초과하여 교부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반환을 명한다. 〈개정 93·3·6〉

제17조 (시행세칙) 이 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3·3·6〉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안산시보조금관리조례

〔안산시조례 제52호 1986. 1. 1〕

전문개정 1988.5.19 조례 제19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조금"이라 함은 시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이하"법령"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보조대상)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보조신청) ①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 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본 부담액
5. 보조사업 기간
6.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서가 영위하는 주·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소용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보조사업의 효과
8.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 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제7조(보조금의 교부조건) ①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보조금등의 교부결정 통지) ①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지령서를 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

②보조지령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9조(교부방법) 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기타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공공단체에 대하여는 사업완성전 또는 사업년도 만료전 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사정변경에 의한 보조 결정의 변경, 취소) ①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 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②시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보조사업 계획상의 예정된 토지 또는 기타 신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이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③제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할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1조(용도외 사용금지)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한 시장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등) ①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을 계승받는 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보조사업 실적보고) ①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는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공단체가 보조사업 완성전 또는 사업년도 전에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는 그 사업의 완성후 또는 당해년도내에 사업 실적과 사업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비 정산검사) ①시장은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승인 되었거나 사업년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보조금의 정산 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②사업비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 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한다.

제15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을 교부를 받은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6조(보조사업의 신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 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제17조(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2.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보조금 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 하지 않을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6.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안산시 보조금관리 조례(1986.1.1. 조례 제52호)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안산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하여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상공자원부 고시 제1994- 69호

공업발전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일환인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의 지정 및 지원사업계획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1994년 6월 7 일

상 공 자 원 부 장 관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의 지정 및 지원사업 계획 개정

1. 목 적

- 지방중소기업이 당해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의 기술개발 자원을 활용하여 현지에서 생산현장의 기술적인 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자율적인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체계를 구축함

2. 관련법규

- 공업발전법 제11조 내지 제13조, 동법시행령 제7조 내지 제12조
-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운용요령 (상공자원부 고시 제94 - 12호, 1994.2)

3. 추진방향

- 지역단위 산.학 또는 산.학.연 협동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능동적인 참여를 전제로 함
- 대학이 당해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공동연구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기술의 연구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대학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함
- 지방공업기술원은 국립연구기관으로서 중소기업 또는 대학의 요청에 부응하여 연구 인력과 보유장비를 적극 지원함

4. 세부내용

가.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의 지정신청

o 신청자격

-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지 않은 대학교 또는 자연과학계 대학(분교를 포함하며 이하 '대학'이라함)으로서 중소기업과 기술개발 컨소시엄을 구성한 대학
- 대학과 중소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내역 및 형태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함

o 신청접수기관 : 생산기술연구원 기술관리본부 또는 대학의 소재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공업기술원

o 신청시 제출서류

- 컨소시엄 구성협약서(참여기업 내역, 참여기업 공통부담금, 개발대상과제도출 및 연구개발에 따른 개별부담금의 납부방법등 포함)
- 향후 1년간 기본 사업계획서 (별표 1의 양식에 의함)
  . 기본사업계획은 대학이 컨소시엄 참여기업, 지방자치단체등과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상공자원부는 기본사업계획서상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에 대해 심의하지 않음
- 대학과 당해지역 지방자치단체와의 컨소시엄 사업비 지원에 관한 협약서
- 컨소시엄사업에 참여할 자연과학계열의 학과 및 교원(전임강사 이상)과 시험 연구용 시설.기자재 보유현황에 관한 자료

나. 지역컨소시엄의 지정

o 지정요건

-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참여한 컨소시엄(단, 강원, 제주지역등 지역특성상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참여하기 어려운 지역의 컨소시엄으로서 산.학.연 협동분과 위원회에서 지역컨소시엄으로 지정하도록 심의.의결한 경우는 예외로 함)

-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사업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컨소시엄

o 지정의 우선순위

- 지정신청 접수결과 각 신청 컨소시엄의 자체확보 사업비(참여기업별 공통부담금 합계액 +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의 총 합계가 당해년도 상공자원부의 지원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학.연 협동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의거 우선순위를 결정함

o 지정의 형태 및 기간

- 지정은 상공자원부와 컨소시엄구성 대학과의 지원협약 체결로써 갈음하며 지원협약기간은 1년 단위로 함

- 컨소시엄을 구성한 대학의 총(학)장은 협약의 당사자로서 필요한 경우에 컨소시엄의 운영을 총괄할 교원을 선정하여 당해 교원을 컨소시엄사업의 총괄책임자로 하거나 총(학)장이 컨소시엄의 총괄책임자가 되어야 함

다. 지역컨소시엄에 대한 지원

o 연구장비와 연구인력 지원

- 국립공업기술원(지방공업기술원 포함)은 지역컨소시엄을 구성한 대학이 요청할 경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유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대학과 협의 하여 연구인력도 지원하여야 함

o 전문연구기관의 알선

- 지역컨소시엄을 구성한 대학은 필요한 경우 본 사업의 관리기관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별로 공동연구를 수행할 전문연구기관의 알선을 요청할 수 있음

o 사업비 지원 및 지원절차

- 상공자원부의 총 지원금액은 지역컨소시엄의 당해 사업년도 총 기본계획 사업비의 50%(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의 2배) 범위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개발대상 과제의 특성등을 감안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이 산.학.연 협동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추가 지원함

- 상공자원부는 지원예정 사업비의 일부를 지역컨소시엄 지정협약 체결시 지급할 수 있음

- 지역컨소시엄으로 지정된 후 대학은 3개월 이내에 당해사업년도에 연구개발할 과제를 확정하고 연구개발에 따른 세부사업계획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세부사업계획서는 기본사업계획서에서 제시되지 않은 연구개발대상과제를 위주로 하여 작성하여야 함(별표 2의 양식)
  . 세부사업계획에서 제시되는 과제는 참여기업이 원하는 과제이어야만 하며, 기술분야, 기술수준, 중복개발여부를 불문함

- 상공자원부는 세부사업계획의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함
  .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심의는 대상과제의 개발가능성과 소요사업비의 적정성에 주안점을 두며 소요사업비의 산정기준은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운용요령에 의함

라. 지역컨소시엄의 운영

o 지역컨소시엄의 운영주체는 컨소시엄구성 대학과 참여기업으로서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합의에 의한 협약에 의하여 운영하고 성과도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모든 참여기업은 개발대상과제에 관계없이 일정한 경비(공통부담금)를 부담하여야 함
- 대학은 참여기업과의 토론 및 현장진단등을 통해서 개발대상과제를 도출하여야 하며 도출된 과제에 대하여는 참여기업의 동의를 얻어야 함

- 대학은 도출된 개발대상과제를 참여기업과 함께 학제적으로 연구개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연구개발하여야 함
- 지역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기업은 협약에 의거 가입.탈퇴할 수 있으나 지역컨소시엄의 참여기업 수는 10개 이상을 유지하여야 함
- 지역컨소시엄에서 연구개발된 성과는 해당기업이 5년간은 독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함

마. 지역컨소시엄에 대한 평가 및 후속조치

o 지역컨소시엄으로 지정된 컨소시엄 구성대학은 사업년도 종료 1개월 전까지 당해 사업년도의 지역컨소시엄 운영실적 보고서 및 익년도 기본사업계획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o 컨소시엄 운영실적 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컨소시엄 활동전반에 관한 총괄요약 보고서 (상호토론, 현장진단, 과제도출, 연구개발착수 및 추진성과, 사업비사용내역등)
- 과제별 연구개발결과 요약 보고서 (공정기술의 경우 비교적 상세하게 작성하며 성과에 관한 참여기업 의견 첨부)
- 시제품, 상품의 견본,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서 사본(사업화 가능성 및 상품성등에 관한 참여기업 의견 첨부)

o 관리기관은 지역컨소시엄 운영실적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참여기업으로 부터 직접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대학에 대하여 필요한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o 지역컨소시엄에 대한 평가는 연구개발결과 위주로 평가하며, 평가결과는 "지원중단"과 "지원지속"으로 구분

o "지원지속"으로 평가된 컨소시엄중 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한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컨소시엄에 대하여는 "주의촉구"로 구분

o 평가결과 "주의촉구"를 2번받은 컨소시엄과 "지원중단"으로 평가받은 컨소시엄에 대하여는 향후 5년간 지원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함

o "지원지속"으로 평가된 지역컨소시엄이 지정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하는 경우에는 익년도 기본사업계획에 의거 지원협약을 체결 함

5. 사업의 추진체계

가. 산.학.연 협동분과위원회

o 성 격

- 공업발전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기반기술개발전문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서 상공자원부장관 자문기구

o 기 능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의 지정에 관한사항 심의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의 세부사업계획에 관한사항 심의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의 운영실적 평가에 관한사항 심의
- 기타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이 의뢰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o 구성 및 운영

- 상공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산업계, 학계, 연구계등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다음 각호의 자는 임기제한 없는 당연직 위원으로 함
  . 상공자원부 지방중소기업과장 (위원회 간사)
  . 생산기술연구원 기술관리본부 평가관리부장 (위원회 공동간사)

. 산. 학. 연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이 지정된 지역의 시. 도지사가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 산. 학. 연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의 소재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공업기술원장

- 위원회는 상공자원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지방공업기술원장은 관할지역의 지역컨소시엄에 관한 사항에 한해 심의함

나. 관리기관

o 생산기술연구원은 본 사업의 중앙 관리기관으로서 아래업무를 담당함

- 산. 학. 연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 지정신청 접수
- 산. 학. 연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이 요청하는 전문연구기관의 기술개발 참여 알선
- 접수된 기본사업계획서 및 세부사업계획서와 운영실적 보고서의 검토
- 산. 학. 연 협동분과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작성 및 상공자원부장관에 대한 제출
- 산. 학. 연 협동분과위원회 심의결과의 종합정리 및 상공자원부장관에 대한 보고
- 기타 상공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o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업기술원은 본 사업의 지역관리기관으로서 상공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담당함

다. 지원기관

o 지방공업기술원은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업무를 담당함

- 원활한 컨소시엄구성을 위한 관할지역내에 소재한 대학과 중소기업간의 상호연계 및 알선
- 지역컨소시엄으로 지정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는 대학과 중소기업의 요청에 의한 가능한 범위내에서 연구인력 및 보유장비의 지원

- 관할지역내에 소재한 지역컨소시엄으로 지정받고자 하거나 지정된 지역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는 대학으로 부터의 신청서, 세부사업계획서, 운영실적 보고서등의 접수

(지방공업기술원은 관할지역내의 대학으로 부터 상기서류를 접수받은 경우 접수일시를 명기하고 즉시 생산기술연구원으로 이송하여야 함)

o 지방자치단체는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업무를 담당함

-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컨소시엄을 구성한 대학간의 협약에 의한 지역컨소시엄 사업비 지원
- 지역컨소시엄의 운영에 대한 행정지원

6. 기 타

o 이 계획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중 필요한 사항은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운용요령을 준용함

< 별 표 1 >

기 본 사 업 계 획 서

1. 개 요

* 사업의 기본방향 및 중점추진사항등에 대해 간략히 기술함

2. 기초사업

* 참여기업별 전담교수진의 지정 및 개발대상과제의 도출, 참여기업에 대한 정보.지식의 제공, 상호토론등 컨소시엄을 통한 참여기업들의 기술향상을 위한 기초사업계획

3. 연구개발사업

가. 공동연구개발

* 참여기업의 전반적인 기술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계획
(기본사업계획작성시에 과제가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공동연구개발 방향만을 제시하며, 참여기업들의 특성으로 인해 공동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생략함)

나. 참여기업별 연구개발

* 지역컨소시엄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로서 대학과 참여기업과의 협의를 통하여 도출된 과제의 연구개발활동 계획이며 기본사업계획수립시 과제가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참여기업별 연구개발 방향 내지 기준만을 제시함

4. 소요사업비

구 분		항 목	소 요 액	내 역
일반관리비		* 컨소시엄전담 사무요원 인건비, 국내외여비, 사무용품비, 회의비, 수용비, 판공비등		
기초사업비		* 참여기업별 전담교수진 지도경비, Seminar 또는 Workshop 개최경비, 정보획득비등		
연구개발 사업비	공동연구 개발	* 확정된 과제가 있을 경우 대상과제를 명시함	* 추정소요액	
	참여기업별 연구 개발	"	"	
	소 계		"	
계				

※ 소요사업비 총액은 참여기업 공통부담금 합계액과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을 합한 금액의 2배 범위내에서 계상하여야 함

※ 참여기업별 연구개발사업비의 추정 소요액은(도출예정과제수 x 1과제당 연구개발비 지원금액)으로 산출하며 공동연구개발사업비의 추정소요액을 산정하였으나, 세부사업계획 확정시까지 과제를 도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참여기업별 연구개발사업비로 전용함

5. 대학(교)에서 컨소시엄구성 및 운영을 위한 예산등 각종 지원내역

< 별표 2 >

세부 사업 계획서

1. 총 괄

* 공동연구개발과제와 참여기업별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 전문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위탁연구개발 포함)등의 현황 개요

2. 소요사업비

* 세부사업계획 결정에 따른 소요사업비
(기본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양식에 의하되 변동 및 증감내역을 대비함)

3. 과제별 연구개발사업

* 각 과제별로 아래 양식에 의거 별지로 작성함

가. 개요

과 제 명		
과제의 구분	(공동연구개발 또는 참여기업별 연구개발 여부)	
개발 책임자	(소속기관) (직. 성명)	
총 개발기간	199 . . . ~ 199 . . . (개월)	
개발사업비	1 차년도	
	2 차년도	
	3 차년도	
	4 차년도	
	계	
해당컨소시엄 참여기업	※ 공동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생략	

나. 연구개발사업 최종목표

* 연구개발을 통해 이룩하고자 하는 기술개발 성과

다. 연도별 연구개발사업 내용

* 2개년이상 소요되는 과제의 경우 매년도별 기술개발 목표

라. 연구개발 참여 연구원 및 현황

소속기관	직. 성명	전 공 및 학 위		참 여 율	해당분야 연구경력 (년)

※ '참여율'이라 함은 참여 연구원이 당해과제의 연구개발에 전념하는 정도를 말하며, 공입기반기술개발사업 운용요령 제22조에 연구원의 소속기관 및 직급등에 따른 참여율 인정범위가 정해져 있음

마. 당해년도 연구개발 사업비 내역 (차년도)

(단위 : 천원)

항 목	현 금	현 물	계	구성비
1. 인 건 비				
2. 견품. 시약. 재료등 구입비				
3. 연구용 시작품 제작비				
4. 연구기자재 구입 및 임차료				
5. 개발보전비				
6. 기술정보 활동비				
7. 제 잡 비				
8. 위탁 개발사업비				
9. 계				

※ 기업이 부담하는 현물은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작성함

바. 당해년도 구입 또는 임차가 필요한 연구기자재 및 견품, 시약, 재료, 내역 (차년도)

연구기자재	구 입	
	임 차	
견품, 시약, 재료		

사. 연구개발 대상과제에 대한 컨소시엄 참여기업의 동의서

당사는 지역컨소시엄의 참여기업으로서 본과제의 연구개발에 동의함과 아울러 지역컨소시엄에서 지원하는 참여기업별 연구개발사업비로서 충당되지 못하는 연구개발비에 대하여는 당사가 부담할 것을 확인 합니다.

(※ 참여기업별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19 년 월 일

기 업 체 명	대 표	
_____	_____	직 인
_____	_____	직 인
_____	_____	직 인

※ 공동연구개발 과제의 경우 컨소시엄 참여기업 전원의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